

KR 1-08080

Rev.5 February 2025

통신기기실

2025. 2.



국가철도공단

목 차

1. 용어의 정의	1
2. 통신기기실 크기	1
3. 통신기기실내 기기배치	1
4. 통신기기실 보호	2
해설 1. 통신기기설비	3
1. 통신기기실의 조건	3
2. 통신용 기능실	4
2.1 통신기기실의 면적확보기준	4
2.2 전원실(축전지실 포함)	4
3. 통신기기실 기기배치	4
4. 통신기기실 보호	5
RECORD HISTORY	8

1. 용어의 정의

(1) 표준 온·습도

설비의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실내 온·습도

(2) 상대습도

기체의 절대습도와 그와 같은 온도에서 수증기로 포화되어 있는 기체의 절대습도와 의 비(比) 또는 존재하는 수증기의 압력과 그와 같은 온도의 포화 수증기압과의 비(比)로서 [%] 또는 [% (RH)]로 나타낸다. 여기서 포화수증기 및 포화 수증기압은 액체 상태의 물에 대한 것을 말한다.

(3) 분진

공기 중에 부유하는 입자상태의 물질

(4) 유해가스

설비에 퇴색, 부식, 손상을 줄 수 있는 가스

2. 통신기기실 크기

(1) 통신기기실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설계한다.

- ① 장래 장비증설에 대비하여 면적을 산출한다.
- ② 각 역에 설치되는 통신기기의 배치 및 통신기기의 크기를 고려하여 산출한다.
- ③ 통신기기실 및 정보기기실에는 통신장비 운영에 필요한 온도,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.
- ④ 단, 선로 연변의 통신기기실 등 소량의 장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장비사양을 검토하여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(2) 통신기기실 내부구조는 철도설계지침(건축편)에 따른다.

3. 통신기기실내 기기배치

- (1) 업무형태, 장비기능, 수용시설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호환성과 유연성을 고려한다.
- (2) 향후 통신수요가 증가할 경우 증설될 통신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.
- (3) MDF(배선반 포함)는 케이블 인입점과 통신장비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케이블 수용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곳에 배치한다.
- (4) 통신기기실내의 벽과 장비간 이격거리는 유지보수 및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1m이상 확보한다.
- (5) 무정전전원장치 및 축전지는 통신기기실 외 별도의 기능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할 때는 통신장비와 이격하여 설치한다.



4. 통신기기실 보호

통신기기실을 출입하는 자를 감시·통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(타 분야와 통합기기실로 출입자의 통합감시가 가능한 통신기기실은 제외).

- (1) 무인통신기기실의 출입구에 신원확인이 가능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한다.
- (2) 무인통신기기실을 출입하는 자의 신원 등 출입기록을 유지, 보관한다.
- (3) 주요 정보시스템 장비는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물에 설치한다.
- (4) 무인통신기기실에는 출입, 전원, 온·습도 상태 등 환경을 감시하고 원격으로 경보해주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통신기기실의 물리적인 상태나 보호조치는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 제3조(출입자의 접근제어 및 감시)를 적용한다.



2. 통신용 기능실

2.1 통신기기실 면적확보기준

- (가) 총괄국 : 130m² 이상
- (나) 집중국 : 90m² 이상
- (다) 단국 : 50m² 이상
- (라) 변전소, 급전구분소, 병렬급전소 : 15m² 이상
- (마) 기타 보조 : 10.2m² 이상

주) 1 총괄/집중/단국개소는 **역무통신실**(구, 전산실)과 지원용 통신기기실(구, 통신실)을 통합한 면적임

주) 2 통신기기실은 역무실과 인접하여 배치하여야 함.

주) 3 통신사업자용 소요면적은 미 포함된 면적임.

주) 4 총괄국 또는 집중국 개소의 통신기기실 감시실은 미포함된 면적임

2.2 전원실(축전지실 포함)

전원실(축전지실 포함)은 통신기기실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원실을 통신기기실과 인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.

3. 통신기기실 기기배치

- (1) 업무형태, 장비기능, 수용시설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호환성과 유연성을 고려한다.
- (2) 향후 통신수요가 증가할 경우 증설될 통신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(여유율 20% 이상)을 확보한다.
- (3) 배선반은 케이블 인입점과 시스템 배치위치를 고려하여 케이블 수용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곳에 배치한다.
- (4) 통신기기실내의 벽과 장비간 이격거리는 유지보수 및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1m 이상 확보한다.
- (5)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시킨다.
- (6) MDF 또는 배선반을 중심으로 좌·우에 전송설비 및 교환기 등을 배치한다.
- (7) 유지보수, 시험시 사용하기 위해 통신기기실 중앙에 책상을 배치한다.
- (8) 통신기기실의 위치는 역무실과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배치한다.
- (9) 통신기기실의 상부에는 상하수도, 냉난방 등이 통과하거나 위치하여서는 안된다.
- (10) **통신기기실**과 역무통신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. 단,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(11) 통신기기실의 선정조건

- ① **통신기기실 내부구조는 통신장비의 설치와 통신회선의 연결, 구성 등 통신기기실 운용**

에 적합하도록 한다.

- ② 통신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구내간선용 수직덕트는, 건물 외부 또는 본선의 맨홀이나 공동구에서 통신기기실로 직접 연결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건물 내 간선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한 정보통신용 수평 및 수직덕트는 전기설비나 공조설비와 분리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, 설치하는 덕트나 트레이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통신기기실의 바닥에는 무전도 타일을 설치하여 외부 정전기로 부터 정보통신설비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⑤ 통신기기실의 상부 또는 바닥에는 수도관, 오수관 등 건축배관 설비를 피하여 위치를 선정한다.

4. 역무통신실 기기배치

- (1) 업무형태, 장비기능, 수용시설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호환성과 유연성을 고려한다.
- (2) 배선반은 케이블 인입점과 시스템 배치위치를 고려하여 케이블 수용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곳에 배치한다.
- (3) 역무통신실내의 벽과 장비간 이격거리는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1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.
- (4) 역무통신실의 위치는 통신기기실과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배치한다.
- (5) 역무통신실의 상부에는 상하수도, 및 냉난방 배관 등이 통과하거나 위치하여서는 안된다.
- (6) 통신기기실과 역무통신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한다.
- (7) 역무통신실의 기기배치는 역무원 감시가 필요한 설비를 우선적으로 앞 열에 배치하도록 한다.



<기기배치 예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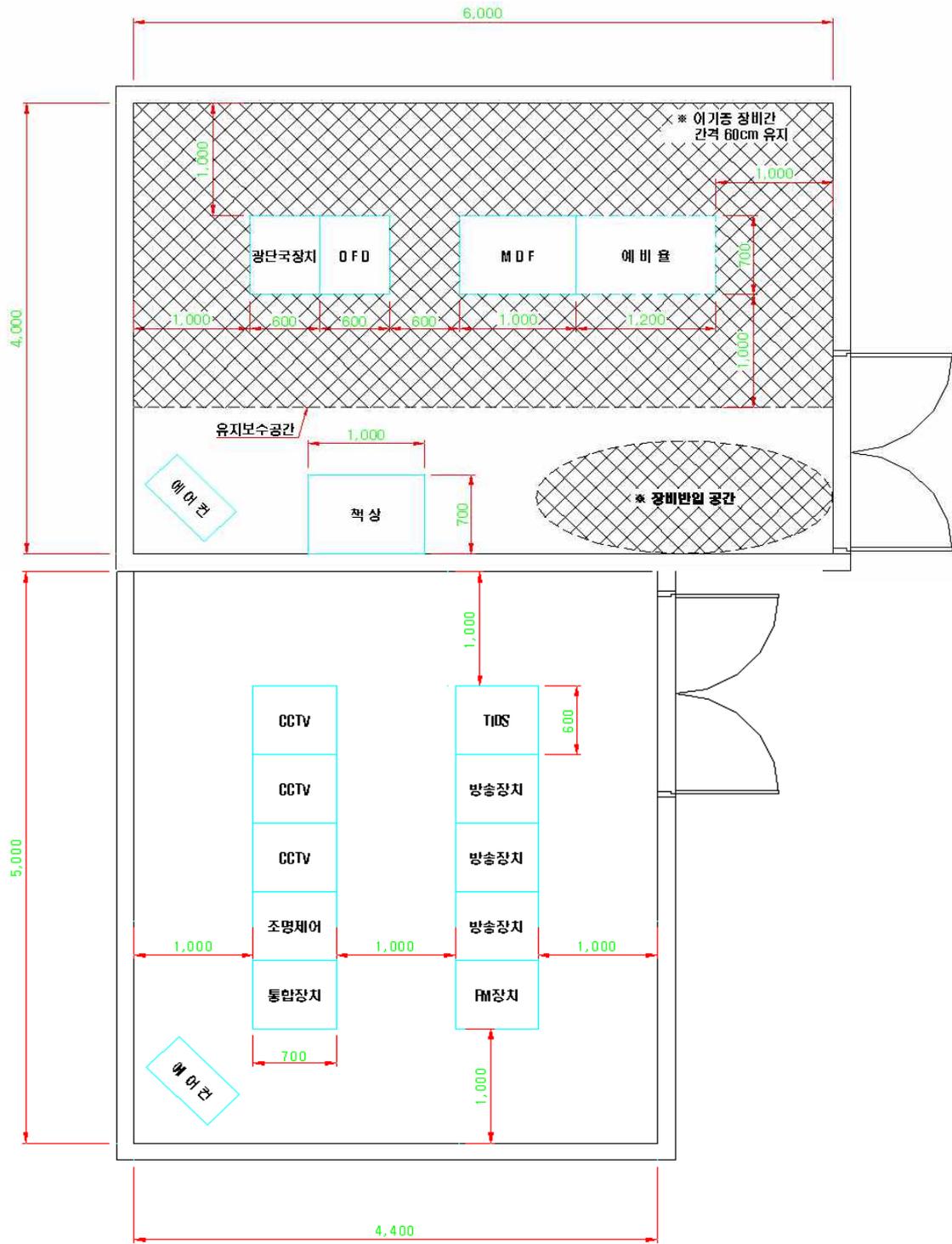


그림 1. 단국 지상역사 기기 배치 예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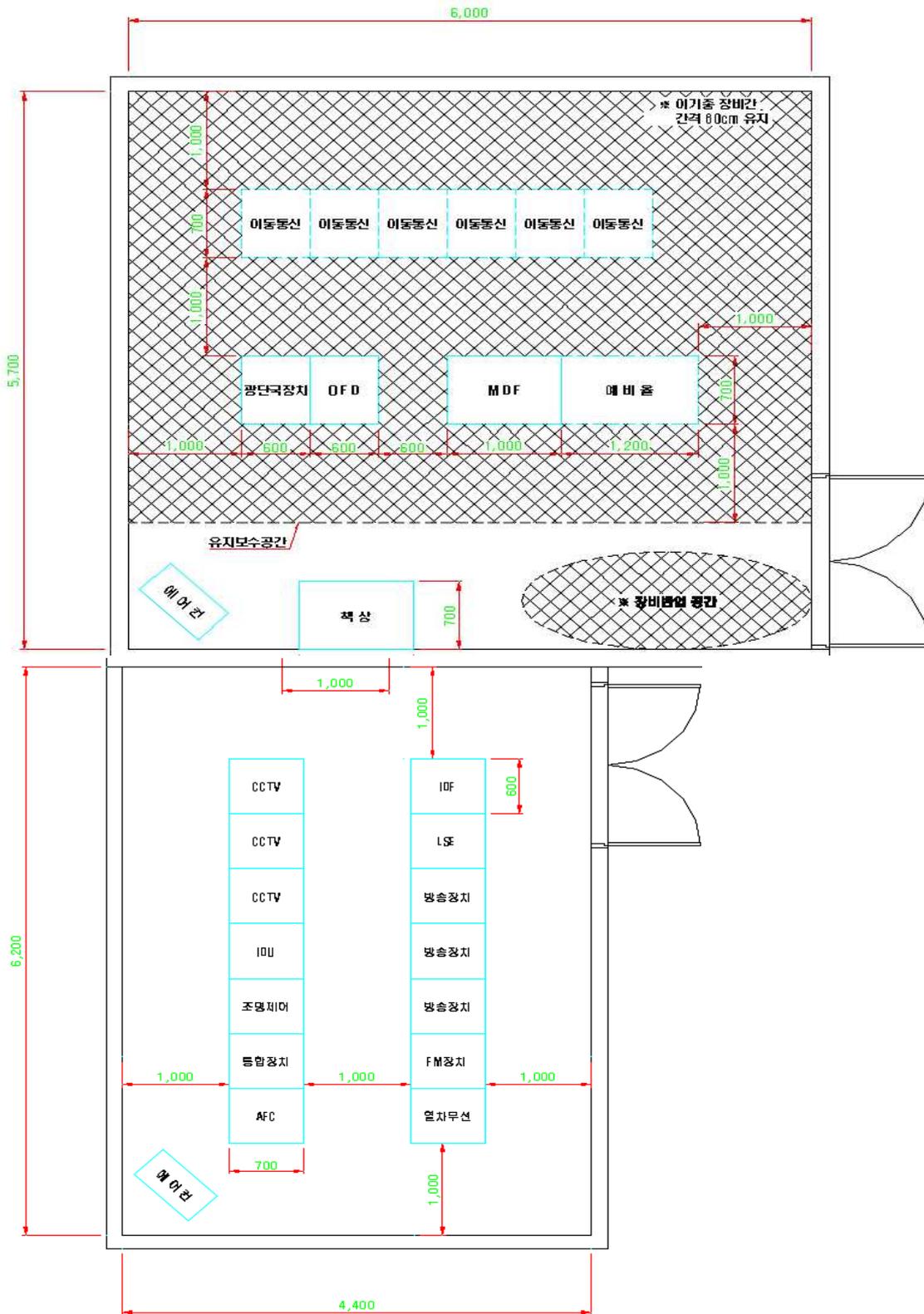


그림 2. 단국 지하역사 기기 배치 예시(기간통신사업자 설비 설치 포함)



RECORD HISTORY

Rev.0('12.12.05) 철도설계기준 철도설계지침, 철도설계편람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준 체계를 국제적인 방법인 항목별(코드별)체계로 개정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하는데 목적을 둬.

Rev.1('18.12.17)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

Rev.2('19.12.19)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

Rev.3('20.12.29)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

Rev.4('22.12.27) 전원실 단독설치 기준 개정

Rev.5('25.02.11) “정보통신분야 철도건설기준 고도화 용역” 결과에 따른 각종 문구·자구 등 정비